
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



동부지방산림청

□ 위원회 구성 근거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설치·운영

□ 위원회 구성

- 위원장 :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함
 -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
- 사용자 위원 : 안전보건관리책임자(기획운영과장), 안전·보건관리자, 산업보건의, 안전보건관리책임자(기획운영과장)가 지정하는 9명 이내 부서장
 -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부서장의 경우 심의안전별 관련 부서장으로 지정
- 근로자 위원 : 근로자대표,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 근로자
 - 근로자대표의 경우 공무원노동조합 동부지방산림청 지회장으로 하며, 근로자대표가 지정하는 근로자의 경우 심의안전별 관련 근로자로 지정
 - * 단,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
 - ** 간사 : 지방청 기획홍보팀장

□ 위원회 운영

- 심의사항
 -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-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 -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-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 - 중대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 -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·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○ 개최주기

- 정기 : 분기별 1회, 임시 : 필요 시

○ 의결정족수

- 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* 단, 찬반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

○ 그 외 사항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관계 규정에 의함

□ 기타사항

○ 심의·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는 공문 발송, 각 기관별 게시판 게재, 관리감독자 교육 등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공개

○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부터 제39조까지의 조항에 의거하여 위원회 운영에 적용한다.

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사용자위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(기획운영과장) 및 안전·보건관리자, 산업보건의,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9명 이내 부서장으로 구성한다.

③ 근로자위원은 산림청공무원노동조합 동부지방산림청 지회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임명할 수 있다.

제4조(운영) ① 위원회는 정기 및 임시 회의로 운영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.

③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개최할 수 있다.

④ 회의 개최는 간사를 통해 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개최 시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5조(임무) ①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

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총괄하며 원활한 운영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1. 위원회 소집 및 운영
2. 위원회 의결사항 집행
3. 위원회의 의제결정 및 조정
4. 기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

제6조(회의개최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(화상회의를 포함한다)로 개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3. 질병의 확산방지 혹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제7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.

1.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4.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5.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6.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
7.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
8.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·보건조치에 관한 사항
9.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

제8조(회의 성립 및 의결) 위원회는 사용자위원,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찬반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9조(회의록 작성)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1. 개최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

3. 심의 내용 및 의결·결정사항

4. 그 밖의 토의사항

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1조(회의결과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회의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.

1. 공문 발송

2. 관내 게시판

3. 그 밖의 적절한 방법

회 의 록			
회의명	동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 00 차 정기(임시)회의		
개최일시	2022. . . (). 00:00 ~ 00:00		
장소			
출석위원	구분	성명	소속
	위원장		
	사용자 위원		
	근로자 위원		
	심의안건 1.		
심의내용			
심의결과			